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9. 9 선고 2020나3914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8. 12.

판 결 선 고 2021. 9. 9.

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9. 16. 선고 2019가소2745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,811,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9. 5. 28. 피고가 운영하는 “B외과의원”(이하 ‘이 사건 병원’이라 한다)에서 “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”를 치료하기 위하여 “좌측 대복재정맥에 대해 하지정맥류 근본수술, 좌측 종아리정맥류 발거수술 및 양측 하지정맥류에 대해 혈관경화주사치료”(이하 ‘이 사건 수술 및 치료’라 한다)를 받았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치료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및 치료로 인한 진료비 합계 2,620,160원 중 환자 본인부담액은 1,884,030원이라는 내용의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였고,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9. 5. 29. 이 사건 병원에 재차 방문하여 위 환자부담액 1,884,030원과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맞았던 영양제 비용 100,000원, 수술확인서 발급비용 10,000원, 당일 소독진료비 1,700원의 합계 1,995,73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을 제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가 피고에게 왼쪽 다리에 대한 수술만 요청하였을 뿐 오른쪽 다리에 대하여는 수술이나 혈관경화주사치료를 요청한 적이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수술 및 치료는 왼쪽다리에 대하여만 이루어졌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다리까지 수술 및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1,700,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고, 이 사건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영양제 주사를 놓은 적이 없고 수술확인서 발급비용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당일 소독진료비는 이미 결제되었음에도 위 각 비용으로 111,700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돈 합계 1,811,700원을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, 7, 9,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원고는 2017. 12. 27. 처음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

하지정맥류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,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(을 제1호증)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왼쪽 다리뿐 아니라 오른쪽 다리에도 하지정맥류가 있었던 점¹⁾, ② 이 사건 수술 및 치료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2019. 5. 29.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수술확인서(갑 제1호증)에 이 사건 수술 및 치료의 내용이 “좌측 대복재정맥에 대해 하지정맥류 근본수술, 좌측 종아리정맥류 발거수술 및 양측 하지정맥류에 대해 혈관경화주사치료”라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의 왼쪽 다리에 대하여 수술 및 혈관경화치료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 대하여도 혈관경화주사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된 점, ③ 위와 같이 피고의 양측 다리에 대하여 이루어진 혈관경화주사치료비용 중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인 점, ④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및 치료 전에 원고에게 수술방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보이는 수술방법설명서(을 제2호증)에 따르면, 피고가 원고에게 오른쪽 다리에 대하여는 주사치료만 이루어지고,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수술 및 주사치료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진료비계산서를 받았음에도 그에 따른 진료비가 부당하게 과다 청구되었다거나 이중으로 잘못 청구되었다는 등의 별다른 이의 없이 진료비를 납부하였던 점,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 및 치료와 관련하여 받은 진료비의 내역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한 점, ⑦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처분이 내려졌고,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501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 역시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진료비를 편취 또는 부당히 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오천석, 판사 김영환, 판사 조진용

1) 위 진료기록에 “LT.C2/RT.C1”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“LT”는 왼쪽 다리, “RT”는 오른쪽 다리를 각

의미하고, “C2”, “C1”은 하지정맥류를 1기부터 6기까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CEAP분류법에 따른 표기이다.